

의안번호	2208110
의 퇴 인	김예지의원
회 답 일	2025.5.14.
추계번호	25B0827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매년 정류소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5억 3,200만원, 2031년 38억 2,300만원 등 향후 5년 간 183억 8,100만원(연평균 36억 7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류소의 실태조사 등 (안 제13조의3 신설)	3,532	3,603	3,675	3,748	3,823	18,381	3,676

주 1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산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2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버스정류소 수의 변동, 조사주기 및 방법, 단가 등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 신설 (정류소의 안전 확보)	정류소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(歩道)에 설치하여야 함. 다만,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3조의3 신설 (정류소의 실태조사 등)	시·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의2 신설 (정류소의 안전 확보)	×	• (제3호) 개정안에 따라 보도가 아닌 곳에 설치된 정류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설치가 예상되나, 정류소별 현황 정보는 정류소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보될 사항이며, 정류소별 필요한 안전시설의 종류 및 자원 내용 등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, 정류소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2	안 제13조의3 신설 (정류소의 실태조사 등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다만, 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¹⁾ 적용
-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2025.4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%)	1.9	2.0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·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으로, 실태조사 대상 버스정류장 수에 정류장 1개소당 실태조사 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
 - 실태조사 횟수와 주기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알 수 없으나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(추계대상) 2024년 기준 전국 버스정류소 수는 160,308개이며 향후 5년 동안 정류소 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,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곤란하므로 매년 이 수준의 정류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시도별 버스정류소 현황

(단위: 개소)

시도명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
버스정류장 수	11,109	3,689	3,335	6,234	2,369	2,361
시도명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
버스정류장 수	3,460	1,143	35,469	10,343	7,292	13,694
시도명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합계
버스정류장 수	10,680	13,325	18,174	13,558	4,073	160,308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실태조사 단가) 버스정류소 실태조사 단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정류소 1개소당 2.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(유사사례) 2025년 대전시가 관내 2,361개 버스정류장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비용은 5,000만원([참고자료])으로, 정류장 1개소당 평균 2.1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
 - 실태조사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
[표 3] 대전광역시 버스정류장 실태조사 실시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용역명	사업내용 제품명	조사대상 정류장(개소)	사업비
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실태점검	버스정류장의 교통편의 시설현황 점검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점검	2,361	50

□ (추계결과) 이상의 가정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매년 정류소 설치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5억 3,200만원, 2031년 38억 2,300만원 등 향후 5년 간 183억 8,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버스정류소 수(개소)	160,308	160,308	160,308	160,308	160,308	—
정류소 실태조사 단가(만원)	2.2	2.2	2.3	2.3	2.4	—
합계	3,532	3,603	3,675	3,748	3,823	18,381

- 주 1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산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2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버스정류소 수의 변동, 조사주기 및 방법, 단가 등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산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버스정류소 수의 변동, 조사주기 및 방법, 단가 등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대전시 2025년 버스정류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비 산출내역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사업내용	지출항목	금 액 (천원)	산 출 기 초	집행 시기
총 계		50,000 (100%)		
지방보조금(소계)		50,000 (100%)		
인건비	인건비	26,258	○ 기본급 - 2,625,800원×1명×10월 = 26,258,000원	3월 ~ 12월
	인건비 (보조인력)	7,222	○ 실태조사 교통약자 당사자 일자리 인건비 (2025년 최저임금 60시간 적용) - 601,800원×1명×10월 = 6,018,000원 ○ 주휴수당 - 120,400원×1명×10월 = 1,204,000원	
	수당	7,803	○ 가족수당 - 70,000원×1명×10월 = 700,000원 ○ 자격수당 - 200,000원×1명×10월 = 2,000,000원 ○ 정액급식비 - 140,000원×1명×10월 = 1,400,000원 ○ 기간외근무수당 - 21,280원×10시간×10월 = 2,128,000원 ○ 효도휴가비(추석) - 2,625,800원×60%×1회 = 1,575,480원	
	퇴직적립금	2,838	○ 퇴직적립금 - 34,061,480원× 1/12 = 2,838,000원	
	퇴직적립금 (보조인력)	602	○ 퇴직적립금(보조인력) - 7,222,000원× 1/12 = 601,800원	
	사회보험료	3,508	○ 사회보험(비과세(정액급식비)제외산정) - 국민연금 32,661,480원×4.5% = 1,497,620원 - 건강보험 32,661,480원×3.545% = 1,157,800원 - 요양보험 1,157,800원×12.95% = 149,900원 - 고용보험 32,661,480원×1.15% = 375,600원 - 산재보험 32,661,480원×1.00% = 326,600원	
	사회보험료 (보조인력)	769	○ 사회보험 - 국민연금 7,222,000원×4.5% = 324,900원 - 건강보험 7,222,000원×3.545% = 256,000원	

사업내용	지출항목	금 액 (천원)	산 출 기 초	집행 시기
			- 요양보험 1,157,800원×12.95% = 33,100원 - 고용보험 7,222,000원×1.15% = 83,000원 - 산재보험 7,222,000원×1.00% = 72,200원	
	소계	49,000		
운영비	관내출장비	1,000	○ 관내출장비 - 100,000원×1명×10월 = 1,000,000원	3월 ~ 12월
	소계	1,000		